

반헌법 · 반노동, 친자본, 노동시간 개악에 맞서 과로서 조장법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악(안) 주요 내용과 문제점

윤석열 정권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시기부터 주 120시간 노동을 주장하더니 지난 3월 6일 특정 주에 69시간(최대 80.5시간), 18주 연속 주 64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노동시간 개악(안)’을 발표했다. 2022년 542명, 지난 5년간 2,646명이 과로로 사망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대부분의 노동자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후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3월 20일 대통령실 대변인(이도훈)은 그것은 “대통령 개인 생각” 이라고 일축하여 대통령이 정상이 아님을 확인시켰다. 그리고 3월 21일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라고 다시 발언했다. 그런데 대통령과 비서실이 이런 ‘아무말대잔치’ 를 하는 동안 고용노동부와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행정부가 갈팡질팡하면서 국민을 대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

민주노총이 윤정권의 노동시간 개정안을 ‘개악안’ 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단순 명료하다. 바로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죽기 위한 노동” 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2017년 사망원인 1위인 뇌·심혈관계질환 등 과로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 초과인 경우 매우 위험, 52시간 초과인 경우 위험,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 부담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2017 - 117호)에 따른 업무 부담 여부 주요 내용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업무부담 가중요인)를 하는 경우엔 업무와 질병과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 증가.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에 역행하는 자본가 정권, 윤석열 정권

노동운동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

187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무려 3천 시간이었지만 2021년 들어 1,716시간으로 단축되었다.

OECD 통계(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2,128시간)와 코스타리카(2,073시간), 콜롬비아(1,964시간), 칠레(1,916)에 이어 다섯 번째의 장시간노동 국가다.

이는 그나마 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52시간으로 제한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점차적으로 줄어든 수준이다. (2020년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국가였다.)

시간), 룩셈부르크(1,382시간), 네덜란드(1,417시간), 노르웨이(1,427시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연간 근로시간이 1,300~1,400시간대임을 알 수 있다. 장시간근로 국가 중 하나로 유명했던 일본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607시간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1일 8시간, 1주일 48시간으로 정해졌다. 이후 노태우 정부(1989년)때 1주일 44시간으로, 노무현 정부(2003년)에서 1주일 40시간으로 단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노동시간을 역주행하여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OECD 주요국 근로시간

2021년 연간 근로시간 기준, 단위: 시간



*2020년 기준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발표에 따르면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의 경우, 1,349시간이고, 덴마크(1,363

고용노동부 아니라, 고용사용부!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시기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1주 120시간 노동을 주장
 ⇒ 3월 9일 대통령에 당선된 후 3월 27일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노동시간 개악을 포함한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 제출
 ⇒ 5월 1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 7월 18일 노동시간 개악의 대외적 명분을 만들기 위한 관변전문가집단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경총의 입맛에 맞는 노동시간 개악을 권고
 ⇒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경총이 요구했던 노동시간 개악(안) 입법예고.
 이 정도면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고용사용부’라 하는 것이 맞겠다.

※ 경총이 윤석열 정권에게 요구한 노동시간 개약 주요 내용

- ▶ 연장근로 산정기준을 주단위에서 연·월 단위로 변경
- ▶ 유연근무제를 전체근로자대표가 아닌 업무 단위(부서, 팀 등)의 근로자대표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석 기준 명확화
- ▶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폭넓게 허용
- ▶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
- ▶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 1년으로 확대, 업무 단위 근로자대표 합의 또는 대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
- ▶ 재량 근로시간제를 개별 근로자 동의로 도입
- ▶ 30인 미만 8시간 특별연장근로 일몰제 폐지

노동시간 개약(안)의 주요 내용

정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자료: 고용노동부

	현재	개편안
근로시간 산정 기준	주 단위	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단위
연장근로 총량	주당 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4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미보장) 69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근로시간 지속계좌제	없음	신설

선택근로제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근무 요일을 자유롭게 선택	탄력근로제 '일주일 평균 40시간' 법정근로시간 기준을 맞추면 특정 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단축 가능	근로시간지속계좌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수당을 받는 대신 휴가로 적립. 1시간 연장 근로하면 1.5시간 휴가 적립
---	--	---

위와 같이 노동시간이 개약된다면 사업주는 특정주에 69시간(최대 80.5시간), 연 단위로 적용 할 경우 18주 연속 주 64시간 노동을 강요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사업주 맘대로 법'이 시

행되는 것이다.

개약(안)의 문제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이 '과로사회'라는 것은 OECD 통계뿐만 아니라 국내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과로사 현황						
과로사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산재법	457	503	463	509	486	2418
공무원	13	31	18	30	43	135
군인	5	5	6	6	4	26
사립 교직원	4	5	0	0	2	11
어선원	12	7	10	20	7	56
합계	491	551	497	565	542	2646

용혜인 의원실,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수협 중앙회 제공.

위 통계만 보더라도 매년 500명 이상이 과로로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로로 대표되는 직업병이 뇌·심혈관계질환인데 최근 수년간 매년 800여 명 ~ 1,2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승인받고 있다. 그리고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1년 3년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자살사건(196건) 중 과로와 관련 있는 자살 사건(56건)은 36%에 해당한다.

앞에 나왔듯 1주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높아지며,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교대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중복노출 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고용노동부 고시는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은 위험하니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라는 취지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는 장시간 노동을 더욱 경계하고 있다. ILO는 2012년 노동시간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노동시간은 어떤 한 주라도 48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WHO와 ILO는 공동연구를 통해 1주 55시간 이상 노동은 뇌졸중,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임을 경고하고 있다.

바짝 일하고 휴가를 가라고. 너나 가라 하와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2021년 기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기업은 40.9%, 연차휴가소진을 76.1%에 불과하다.


특히, 약 9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없는 약 1,720만 명의 노동자는 바짝 일만하고 해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도 있는 휴가도 쓰지 못하는 현실인데 바짝 일하고 ‘제주도 한달살이’를 하라고? 너나 가라 하와이로, 그리고 오지마!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꿈수. ‘부분근로자 대표제’는 반드시 저지해야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부서별, 팀별 대표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장 맘대로 운영될 것이며, 노동조합이 있는 현장도 ‘부분근로자대표’ 인정 등과 관련 노-노 갈등이 우려된다. 노동조합의 대표성과 단결력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강력한 정권 심판투쟁을 조직하자

국내·외적으로 장시간 노동은 과로임이 입증되었고,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재 왕국이란 오명을 쓰고 살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상식이다. 반면,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해고의 위험이 증가한다. 52시간씩 4명이 하던 것을 69시간씩이면 3명이면 가능하다. 즉, 1명은 해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여기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해고의 위기에 몰릴 것이냐, 일자리를 지킬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악법은 과로사 조장법, 해고위협법으로써 민주노총의 조직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한다. 투쟁! 

① 4.19,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정권 규탄! 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2. 4. 19(수) 오후 1시, 서울도심

② 5.1(노동절) 윤석열정권 심판! 노동자 총궐기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3 5. 1(월) 오후2시(가), 서울 및 14개 시도 주요 도심

③ 5월말, 윤석열정부 노동개악안 폐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경고파업

- 일시 및 장소 : 2023. 5월말, 서울(충청이북) 및 주요도심(충청이남)

④ 윤석열정부 취임 1년 투쟁

- 5.10(수) 윤석열 심판! 시국행동의 날(시국선언 및 공동행동), 각계각층 민중진영 및 시민사회

- (가)5.20(토), 윤석열 심판 범국민대회, 양대노총 결의대회 (추진중)